

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

[제정 2003.12.20.]

[개정 2005.02.22.]

[개정 2006.09.08.]

[개정 2010.12.07.]

[개정 2011.12.12.]

[개정 2012.08.31.]

[개정 2015.01.19.]

[개정 2016.04.25.]

[개정 2017.06.30.]

[개정 2024.04.24.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법이라 한다)에 의한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4.25.>

제2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)이라 한다.<개정 2016.4.25.>

제3조(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

<개정 2012.8.31.> <개정 2016.4.25.> <개정 2024.4.24.>

제4조(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) ①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
6. 학교기업운영 등 경영수익사업(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, 연구 및 개발업, 오락·문화 및 스포츠관련 산업, 학술연구용역, 부동산임대업, 전문직별 공사업, 도매 및 소매업, 양식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, 통신기기 및 방송 장비 제조업, 음·식료품 제조업,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)

〈개정 2006.9.8., 2017.6.30.〉

7.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및 학칙이 정하는 사항

제5조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부속기관, 부설연구소 및 기타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2장 조직

제6조(이사)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제7조(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
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행정사무)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행정부서에는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
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·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- 제9조(운영위원회)**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제3장 부속기관

제10조(부속기관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.

1. 창업보육센터
 2.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
 3. 동해안지역발전연구소
 4. 수산과학연구소
 5. <개정 2012.8.31.><삭제 2024.4.24.>
 6. <삭제 2015.1.19.>
 7. <삭제 2015.1.19.>
 8. <삭제 2015.1.19.>
 9. <신설 2015.1.19.><삭제 2024.4.24.>
-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- ③ <삭제 2012.8.31.>

제10조의 2(보상금의 지급) ① 산학협력단 재원 수입에 기여한 대학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재원의 성격, 수입금액의 정도,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
【본조신설 2012.8.31.】

제4장 재산 및 회계

제11조(재산의 종류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
제12조(운영경비)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운용수익
2. 출연금·기부금·보조금
3. 사업수익
4. 차입금

제13조(재무관리의 제한)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
제14조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<개정 2016.4.25.>

제5장 보상금

제15조(보상금의 지급) ①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수입금의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〔본조신설 2011.12.12〕

제6장 보칙

제16조(비밀유지의무) 본 정관에서 규정한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정관의 변경) 정관의 변경은 학칙에 의한다.

제18조(해산)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
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.

③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.

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19조(공고)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1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
2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

3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
② 공고방법은 본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일간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보에 게재 한다. <개정 2012.8.31.><개정 2024.4.24.>

제7장 부칙

제1조. 본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는 2004년 1월 1일로 한다.

제2조. 본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. 총장은 본 정관의 효력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.

부칙(2010. 12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12. 12.)

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8. 31.)

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1. 19.)

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4. 25.)

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6. 30.)

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 4. 24.)

본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